

2018년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심사 공고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중독심리학회는 본 학회가 정한 중독심리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규정 및 중독심리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자격심사를 실시합니다. 자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전형에서 합격한 자에게 중독심리전문가 또는 중독심리사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학회의 자격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중독심리 전문가/중독심리사 자격심사에 응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3.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관리위원회

- 목 차 -

- 자격심사 청구 자격
- 자격심사 서류 접수처
- 자격심사 청구 일정
- 자격심사비
- 자격심사 서류 양식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사항 안내
- 기타 안내사항
- 부록 1. 자격검정 관련 주요 내용 공지

■ 자격심사 청구 자격

- 청구자격 필수사항(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함)

- (1) 한국심리학회 및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원자격 유지자**(회비 완납자)
 - 응시자 및 수퍼바이저 모두 회원자격 유지자여야 함.
- (2) 한국중독심리학회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한 타 전문기관이 주관한 **'중독심리전문가 및 중독심리심리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수한 자**
- (3)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자격규정-제3장 제5조(중독심리 전문가) 또는 제6조(중독심리 심리사)' 의 **세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본 학회가 규정한 수련과정 이수 한 자**

- 위 청구자격 필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회원께서는 **본인에게 준하는 자격규정 및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신 후,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심사 서류 접수처

- (34098)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하기동) 침례신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김에스더

■ 자격심사 청구 일정

- 자격검정 공고일 : 2018년 8월 3일(금)
- 심사서류접수 마감일 : 2018년 8월 31일(금) 17:3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심사서류 결과 발표일 : 2018년 9월 5일(수) 개별 통지
- 공동교육 : 2018년 9월 15일(토) 09:00~19:00 (*교육 신청인원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추후 제공지)
- 필기 및 면접시험 : 2018년 9월 22일(토) / 장소 : 미정(대상자에게 개별공지)
 - 오전 : 중독심리사 필기시험 / 중독심리전문가 면접시험
 - 오후 : 중독심리사 필기합격자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공지 : 2018년 9월 26일(수) 개별통지

■ 자격심사비

- 계좌 : <국민은행> 461302-04-276352 김에나(한국중독심리학회)
- "본인 성함+생년월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홍길동690922).
- 자격심사 비용 (자격증 발급비용 2만원 포함, 필기시험 불합격 시 면접 및 심사비 환불예정)

| | 필기시험 | 면접 및 심사비 | 총계 |
|--------------|---------|----------|------------|
| 중독심리사(1항,3항) | 75,000원 | 175,000원 | 총 250,000원 |
| 중독심리사(2항) | . | 175,000원 | 총 175,000원 |
| 중독심리전문가 | . | 175,000원 | 총 175,000원 |

- 2018년 자격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제 3장 자격규정, 중독심리사(제 6조) 1항, 3항에 해당하시는 회원께서만 응시하시고,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 2항에 해당하시는 회원께서는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면접시험만 응시하시면 됩니다.

■ 자격심사 서류 양식(붙임 1. 한국중독심리학회 수련수첩)

- 중독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중독심리 자격증 수련수첩 다운로드 후, 인쇄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작성은 컴퓨터 또는 수기 작성 모두 가능함. 단, 서명 및 도장은 원본 날인만 인정).
- 수련수첩 제출 시에는 **슈퍼바이저의 확인(서명 또는 도장)**이 필히 있어야 합니다.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한국중독심리학회 자격심사 서류' 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관련사항 안내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칙에 근거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자격시험 시행 세칙

제 5조 (필기시험영역 및 문항)

필기시험 영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시험문항은 100문항으로 한다.

향정신성 물질의 임상약물학과 역학, 기타 중독의 역학/ 중독의 병인학/ 중독의 시작, 진행, 유지/ 예방, 조기개입, 폐해감소/ 선별 및 평가/ 진단 및 이종진단 장애/ 치료 I : 모델 및 접근법(변화단계모델 및 동기강화 접근법, 인지행동접근법 등 포함)/ 치료 II : 치료계획, 치료실행 및 관리, 재활과정/ 특수집단문제(청소년, 여성, 노인, 다문화 집단 등)/ 연구방법/ 윤리

※ "/"로 과목구분

제 6조 (사례면접시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사례면접시험에 응해야 한다.

제 7조 (사례면접 시험 영역)

사례면접시험은 구술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중독심리관련 학식과 전문성, 상담실무경험, 자문능력, 연구수행 능력 및 중독심리 자격증 소지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제8조(자격시험 합격판정) 필기시험과 사례면접시험의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 이어야한다.

제9조 (자격심사 및 판정)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자격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한다.

■ 문의처

- 이메일문의: addictpsy01@daum.net
- 전화문의 : 오후1시~5시30분까지만 운영
010-5594-1134(총무간사) - 서류접수 확인, 공동교육비/자격검정료 입금 확인 등
010-8930-2106(사무간사) - 한국심리학회 또는 한국중독심리학회 가입 관련 문의 등
- 문의 사항은 최대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폭주로 인하여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메일 또는 부재중 시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문의하시기 전에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www.addictpsy.or.kr)에 게시되어 있는 자격규정 및 해석지침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대부분의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서류 결과 및 최종 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 서류심사 불합격자의 서류는 반환요청 시 우편료 수신자부담으로 반환해드립니다.

부록 1. 자격검정 관련 주요 내용 공지

1. 자격검정 응시자 중 수련트랙의 수련수첩 작성

- 중독심리전문가와 중독심리사 수련트랙 자격검정에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첨부된 수련수첩을 작성 해주셔야합니다.
- 또한 대학에서 중독심리 관련 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것으로 중독심리 교육과정을 면제하실 분은 과목명에 '중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임상경험"은 곧 "수련트랙"을 의미하고, "수련"은 중독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 한 수퍼바이저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수련트랙으로 자격검정을 응시하시는 분들은 수퍼바이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본인의 자격 세부기준에 따라 수련수첩 파일의 중독심리 자격심사 제출서류 목록표에 표시 후 서류 일체를 발송바랍니다.

4. 중독심리사 자격검정 관련사항

- "사례보고서"는 수련수첩에 수련 기간 동안의 수련 내용을 기재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수퍼바이저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수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 중독심리사 2항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한국심리학회 산하 14개 분과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합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건강심리사, 범죄심리사 1급 등)
-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준하는 자격증이 아닐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 합니다(예: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상심리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은 인정 불가).
- 참고로 범죄심리사 1급은 2항에 2급으로 해석합니다,

5. 중독심리사의 조건부 합격

* 조건부 합격이란?

중독심리사 자격검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가 '중독심리사'자격과정을 위한 수련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수련생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수퍼비전의 증명이 어려워 자격증 발급이 보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조건부 합격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독심리전문가에게 수퍼비전(유료)을 받고, 해당 증빙서류를 중독심리학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중독심리사 중 조건부 합격 대상

- 중독 관련 기관 소속회원: 기관에 정확히 '중독'과 관련된 내용 및 직책이 명시되면서, 기관장의 서명 및 기관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자격인정(합격)
- 기관 소속 회원이지만 중독 관련 기관이 아닐 경우: 직책이 중독과 관련이 있더라도 기관명에 '중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직증명서와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조건부 합격 처리

6. 중독심리사 서류합격자의 필기/면접시험 응시

- 중독심리사 1항과 3항으로 준비하시는 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모두 응시
- 중독심리사 2항으로 준비하시는 분: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 응시

7. 중독심리전문가 자격검정 관련사항

- 경력(비수련)트랙: 중독심리전문가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부록1.중독심리 전문가 자격세부기준'과 '수련수첩(목록표)'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합니다.
- 수련트랙: 중독심리전문가 3-5항에 해당하며, 반드시 사례보고서(1년=100사례)에 슈퍼바이저의 확인이 있어야합니다.

8. 자격심사 대상은 한국심리학회의 제13분과인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원입니다.

따라서 한국심리학회, 한국중독심리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어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회원에 한해서 자격검정이 실시됩니다.